

보문면 종합감사 결과 보고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5. 6. 23. ~ 6. 26.(4일간)
-  감사범위 : 2013. 9. ~ 2015. 6월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전반
-  감 사 반 : 법무감사담당 외 5명
-  중점 감사내용
 - 세출예산 집행의 적정여부
 - 정부지원사업 관련 관리실태
 - 각종 민원 및 업무처리 실태 적정여부 등

감사결과

- 행정상 조치
 - 39건(주의 5, 시정 9, 현지시정 25)
 - 본 처분 14건(주의 5, 시정 9)
- 재정상 조치
 - 6건 1,099,490원
(회수 2건 637,000원, 부과 2건 157,490원, 징수 1건 305,000원)

주요지적사항

1.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에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이용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도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2014~2015년 4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세출 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2.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소화

-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 제5조(채권의 매출대상 등) 제①항의3에 지방자치단체가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은 대금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 및 수리제조계약은 대금 청구액의 1.5/100의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나, 2013년 하반기 소하천 퇴적토 준설을 위한 장비 임차(굴삭기, 덤프트럭)외 7건을 지출함에 있어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305,000원 미소화

▶ 미소화한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305,000원을 소화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3. 민방위장비 및 화생방장비 관리소홀

- 민방위기본법 제15조(민방위 준비),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민방위 물자·시설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장비·물자)에 따르면 군수는 민방위 시설, 장비 또는 물자의 위치와 활용방법을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비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주민보호를 위한 대비태세 확립과 평시 활용도 제고 및 현황자료 정비를 위해 안전재난과-8385(2014.6.10.)호, 안전재난과-15299(2014.11.17.)호, 안전재난과-6583(2015.5.20.)호로 시달된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 점검정비 계획에서 민방위장비가 장비확보기준(필수 6종)에 맞는 적정장비 확보여부, 민방위장비 보관 장소 적정여부 및 수량 등 현황판 정비 등을 점검·정비 하도록 통보하였고,

안전재난과-4304(2014.3.26.)호, 안전재난과-13100(2014.9.26.)호, 안전재난과-15933(2014.12.4.)호로 통보된 화생방장비 점검계획에 방독면 등 품질보증기간 경과품에 대해서는 교육용 전환 및 폐기처분하고 민방위 새울 전산 통계와 반드시 일치시키고, 화생방장비 물자 창고도 자체점검을 통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음에도, 보고된 필수 6종 민방위장비 보유수량과 새울시스템상 수량이 8점 차이가 나고, 시효초과 되어 불용품으로 폐기 처리한 방독면 60점에 대하여 민방위 창고에 사용가능한 물품과 함께 보관

- ▶ 민방위장비 보유수량과 새울시스템상 수량을 일치시키고, 불용처리된 방독면 60점에 대하여는 교육용으로 전환하여 구분하여 보관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4.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부적정

- 주민등록법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에 의하면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성명변경, 생년월일의 변경, 용모 변경 등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 신청을 하는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제2항에 의하면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재발급할 때 또는 제11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 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 재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음에도, ○○○외 1명에 대하여 성명변경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함에도 각각 수수료 5,000원을 징수하여 발급

-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5.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의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르면 자동차 보유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2013년도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 가입자에게 37,800원 과태료 미 부과

- ▶ 미부과한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 과태료 37,800원을 부과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6. 이륜자동차 취득세 미부과

- 지방세법 제7조에는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자에게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차량은 취득한 금액의 1천분의 20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3년 10월에 사용신고된 이륜자동차 1건에 대하여 취득세 56,690원(2015.5.24.기준금액) 미 부과
- ▶ 부과 누락된 이륜자동차 취득세 56,690원을 부과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7. 농지전용신고 수리 후 면허세 미부과

- 농지법 제35조(농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농지전용 신고)에 의거 농지전용신고 수리 후 지방세법 제35조(신고납부 등)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제4호에 의거 면허세를 신고납부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하면서 2014년 5건, 2015년 2건의 면허세 63,000원 미 부과
- ▶ 부과 누락된 면허세 63,000원을 부과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8. 중소형농기계 및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노동력절감,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중·소형 농기계와 곡물건조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한 농기계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사후관리기간(관리기 5년, 건조기 8년 등) 동안 관리하도록 사업 시행 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나, 중·소형 농기계 및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사후관리 업무를 추진하면서 2010~2013년 지원된 농기계에 대하여 점검기록 미기재(111건), 관리대장 사진 미첨부(83건) 하는 등 농기계 사후관리 소홀
- ▶ 사후관리기간(관리기 5년, 건조기 8년 등)동안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사진 미 첨부된 관리대장에는 사진을 첨부하여 관리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9. 구제역 소독약품 수불대장 작성 소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 제9호 및 산림축산과-12145(2013.12.06.)호에 의거 구제역 예방을 위해 읍면에 배부한 소독약품과 소독장비에 대하여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나,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구제역 소독약품을 수령하여 관리하면서 대장상 잔량(160kg)과 창고보관량(129kg)이 오차수량(31kg)이 발견되어 수불대장 작성 소홀
- ▶ 구제역 소독약품 배부에 철저를 기하고, 업무연찬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10.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참여율 저조

- 산림축산과-1851(2015.01.19.)호에 의거 매년 늘어나는 소각 산불의 해결책 마련을 위해 마을단위로 불법소각을 앓겠다는 서약과 자발적 실천을 위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도록 읍면에 시달하였으나,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참여를 홍보하면서 22개 행정리 가운데 8개리만 서약서 제출
- ▶ 마을명예를 건 서약으로 무언의 책임감을 유도해 무단소각을 근절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가 참여형 산불예방 정책으로 확산되어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11. 통합사례관리 종결가구 사후관리 소홀

- 2014년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에 통합사례관리 종결가구는 종결 후, 6개월 단위로 1회씩 총 2번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도 병행 실시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3회 통보된 김○○외 6가구 중 1가구를 제외한 5가구에 대하여 6개월 내에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모니터 상담지를 작성하여 행복e음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나 사후관리 소홀
- ▶ 대상자에게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모니터 상담지를 작성하여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하여 사후관리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12.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상품권 수령인 관리 소홀

- 가정 및 사업 등에서 전기사용량 절감에 따라 이를 온실가스 감축률로 환산한 포인트 발생량을 인센티브 지급에 따라 상품권으로 배부하고 있으며, 읍면에서는 수령한 상품권을 인센티브 지급대상자에게 교부하여 수령자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2013년 하반기, 2014년 상반기에 인센티브로 지급된 상품권 수령인이 이장 등 1인이 수령인으로 확인
- ▶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인 상품권 지급 시 지급대상자가 수령 확인하도록 하고, 업무연찬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13. 공사비 미 정산 과다 지급

- 건설공사를 설계 시행함에 있어 건설표준품셈, 공사원가계산 적용기준, 현장 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고, 시공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하는 부분을 정리하여 조치하여야 하나, 2013.11.29. ○○○○건설(주) ○○○○과 계약한 「보문면 복지회관 야외무대 설치공사」에 대하여 설계 시 철골조공사에 해당하는 일반 구조용각형강관 자재에 녹막이페인트를 칠하여 부식방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미시공 되었음에도 설계변경이나 정산조치 없이 준공금을 지급하여 도급액 기준으로 253,000원(제경비 포함) 과다 지급
- ▶ 과다 지급된 공사비 253,000원을 회수하고, 준공검사 시 철저한 현장 확인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14. 공사비 미 정산 과다 지급

- 건설공사를 설계 시행함에 있어 건설표준품셈, 공사원가계산 적용기준, 현장 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고, 시공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하는 부분을 정리하여 조치하여야 하나, 2015. 3. 11. ■■■■(주) ○○○○과 계약한 「□□□ 농로포장공사」에 대하여 설계시 L형 측구 전면에 미관을 고려하여 문양스티로폴 부착 및 제거를 반영하였으나 현장 시공시에 작업이 되지 않았음에도 설계변경이나 정산조치 없이 준공금을 지급하여 도급액 기준으로 384,000원(제경비 포함) 과다 지급
- ▶ 과다 지급된 공사비 384,000원을 회수하고, 준공검사 시 철저한 현장 확인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